



서울교육대학교 - 수원대학교 학술 교류 협정서



서울교육대학교와 수원대학교(이하 “양 대학” 라 한다)는 교육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사업을 통해 우호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.

제 1조(목적) 본 협정은 양 대학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원 교육 연계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협력분야) 양 대학은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.

1. 학생 상호 교류
2. 교육실습 지원 및 교육시설의 상호 활용
 - 가. 교육실습을 위한 지원 및 지도
 - 나. 교육을 위한 실험·실습실 상호활용
3. 공동 강좌 및 학술세미나 개최
4. 도서관의 공동 이용
5. 기타 양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

제 3조(효력발생 및 협정기간) ① 본 협정은 양 대학의 서명권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② 본 협정은 효력발생일로부터 합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 지속되며,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종료 6개월 전에 상호 합의한다.

제 4조(보칙) 본 협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 대학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,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3월 17일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송 광 용

송 광 용

수원대학교
총장 이 인 수

이 인 수